

문서번호	행정지원과-13680
결재일자	2015.5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총무담당	행정지원과장	행정국장	
이영미	代장기성	이준기	05/11 손정수	
협 조 자				

- 에스컬레이터의 계단교체에 따른 -

연간단가 계약 조정 계획



행 정 국

행정지원과

- 에스컬레이터의 계단교체에 따른 - 연간단가 계약 조정 계획

청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천시 고가의 내부부속품 교체와 빈번한 안전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의 계단교체에 따른 연간단가 계약사항을 조정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

I 계약 현황

분야	개 요	계 약 사 항			
		계약내용	용역회사	월 보수료(원) (부가세포함)	연간총액 (원)
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	승강기 4대 에스컬레이터2대	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	한양엘리 베이터(주)	1,577,000	18,924,000

※계약기간 : 2015. 1. 1 ~ 12. 31

II 계약변경사항

● 계약변경사유

- 2009년 신청사 입주시 부터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발생이 잦고
실외형이라 우천시 내부부속품의 빈번한 교체로 예산 낭비되는 등의
문제가 발생하여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교체 예정

☑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주요내용

제4조(용역기간)

- ② “갑”은 계약업체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갑”은 계약해지예정일의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하여야하고, “을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<중간생략>

제11조(계약조건의 변동)

“갑”과 “을”은 현 계약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,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(유지보수율)의 조정 및 기타 본 내용의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III

행정사항

● 계약업체 [한양엘리베이터(주)] 와 계약변동사항 서면통지

- 과업지시서 제4조(용역기간)과 제11조(계약조건의 변동)에 따른 실비용정산
- 계약기간 : 2015. 1. 1 ~ 12. 31
※2015. 6월이후 변동된 금액으로 연간단가 재계약
 - 산출내역 :

구 분	수량	단가	연간금액	월보수료	변동사항
승 강 기	4	209,000	10,032천원	836천원	변동없음
에스컬레이터	2	370,500	8,892천원	741천원	2015.6월부터 미지급

※2015. 6월이후 월보수료 지급액 : 1,577천원 ⇒ 836천원

- 기대효과 : 기존 연간총액(18,924천원)대비 조정금액(13,737천원)은

27.4%(5,187천원) 절감 효과

- 예산과목 :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및대외협력체계활성화,쾌적하고편리한근무

환경조성,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,일반운영비,공공운영비